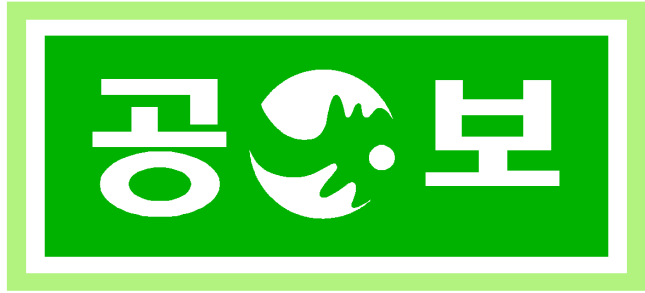
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관	기 관 의 장



제 871 호 2014. 2. 10(월)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-30호[도로명주소 고시]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-31호[도로명주소 변경 고시]4

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-123호[도로명주소 공시송달 공고]6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-127호[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]8

회 관								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기획홍보실(☎241-7124 행정7124)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4 - 30호

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4년 2월 10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복구 명촌20길 12외 4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 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4. 2. 10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순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808-14L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0길 12(진장동)	2014-02-10	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12-27	
2	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 438	울산광역시 북구 무릉로 839(신현동)	2014-02-10	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8-20	
3	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158-3	울산광역시 북구 책골길 48(효문동)	2014-02-10	효문초등학교의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 일대를 말하는데 효문공단산입단지가 조성된 지역으로 휴차 승도산생과 관련있어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1-05	
4	울산광역시 북구 화계동 252-7	울산광역시 북구 동대8길 35(화계동)	2014-02-10	기존 화방길이 주상명사이므로 도로명 사용으로 부적합하고 동대로에 분기하므로 일련번호방식에 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8-20	
5	울산광역시 북구 어룡동 34	울산광역시 북구 아룡2길 7(어룡동)	2014-02-10	아름마을 사업이 진행 중인 곳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 - 31호

도로명주소 변경 고시

우리구 관내 도로명주소 변경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4년 2월 10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변경사항 : 울산광역시 북구 관문길 187-26외 2건

종전주소	변경전 도로명주소	변경후 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변경일	변경 사유
(별지참조)	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척과 (☎052-241-7583, 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i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4. 2. 10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조서

순번	종전주소	변경 전 도로명주소	변경 후 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변경일	변경 사유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81외 1필지	울산광역시 북구 관문길 187-25	울산광역시 북구 관문길 187-26	2014-02-10	부여오류	
2	울산광역시 북구 호민동 500-1	울산광역시 북구 호천1길 31	울산광역시 북구 호천1길 29	2014-02-10	부여오류	
3	울산광역시 북구 호민동 511	울산광역시 북구 호천1길 32-1	울산광역시 북구 호천1길 31	2014-02-10	부여오류	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 - 123호

도로명주소 공시송달 공고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고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·점유자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이를 고지하였으나, 주소(소재지)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수 없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공고합니다.

2014년 2월 10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○ 공고기간 : 2014. 2. 10. ~ 2. 25.(15일간)

○ 부여하는 도로명주소

고지대상자	생년월일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 및 부여사유
“별도열람”				

※ 도로명주소는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(☎ 052-241-7583,7585) 및 도로명주소검색 시스템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○ 도로명주소 고시일 : 2014. 3. 3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※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(☎052-241-7583,758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공시승달 대상자

연번	고지대상자	생년월일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부여사유
1	최정자	56.12.02	호수지구 21B 10L	수동3길 22	2013-12-30	수동마을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
2	박복순	53.07.15	호수지구 188 5L	수동5길 21-1	2013-12-30	수동마을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
3	서종걸	50.10.15	호수지구 188 5L	수동5길 21-1	2013-12-30	수동마을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
4	윤정만	83.01.15	호수지구 188 5L	수동5길 21-1	2013-12-30	수동마을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
5	김상곤	65.03.15	호수지구 21B 10L	수동3길 22	2013-12-30	수동마을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
6	윤주환	80.06.20	호수지구 21B 10L	수동3길 22	2013-12-30	수동마을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 - 127호

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4년 2월 10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제정이유

- 우리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·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새마을운동조직의 정의(안 제2조)
- 나. 새마을사업의 지원(안 제3조)
- 다. 새마을사업의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(안 제4조)
- 라.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등(안 제5조)

3. 의견제출

-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주민참여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의견 제출할 곳
 - 주소 : 우)683-707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주민참여과
 - 전화 : 052-241-7263
 - FAX : 052-241-7260
-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 등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주민참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담당자 : 김기항
 - 전 화 : 052-241-7261
 - 이메일 : hdy242@korea.kr

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

울산광역시 복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복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·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새마을운동조직”이란 새마을운동 복구지회와 그 산하단체(회원단체와 그 하부조직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2. “새마을지도자”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.
3. “새마을사업”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) 울산광역시 복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는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
2.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
3.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훈련
4. 새마을회에서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지원신청 및 정산보고) ① 새마을운동조직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,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
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.

제5조(사기진작 등)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
의 사항을 격려할 수 있다.

1.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유공자 표창
2.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
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